

이사회 규정

LocknLock

이사회 규정

주식회사 락앤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이사회는 등기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의장)

- ① 이사회에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사회 의장이 별도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 대표이사(사장)가 이사회에 의장직을 수행한다.

② 이사회 의장이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직무를 대행할 이사를 정한다.

제3장 회의

제6조(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홀수월 셋째주 수요일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 소집권자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이사는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회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전에 목적, 일시, 장소를 서면, 구두, 전화, Fax, E-mail 및 기타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사항 중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따라 규정된 제4호의 (1) 및 (1)-2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의사항)

-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회사에 관한 다음의 각 호 사항으로 한다. 자회사에 관한 사항은 ①-2에서 규정한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 (2) 영업보고서의 승인
- (3) 재무제표의 승인
- (4) 정관의 변경
- (5) 자본의 감소
-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7) 주식의 소각

-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10)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13)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5) 이사의 보수
-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2)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과 동 계획의 중요한 변경
- (3) 신규사업 또는 신규 제품군이나 신규 브랜드의 개발
-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5) 삭제 <2023.11.14.>
- (6) 삭제 <2023.11.14.>
- (7) 공동대표의 결정

-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9)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10)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11)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12)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13)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 (14)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15)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변동, 신규법인 설립
- (16)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17)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18) 회사의 중대한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사항 (영업정지, 거래중단, 제품 수거·파기, 생산중단, 단일판매·공급 계약 등)
- (19) 중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가. 정관
 - 나. 이사회 규정
 - 다.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의 결의(단,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결의로 처리)
 - 라.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 마. 위임전결규정
 - 바. 취업규칙
 - 사. 상기 각호의 규정의 개폐시 법령, 단순 자구수정, 정관 등 상위 규정의 변경에 따라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0) 기타 회사의 중요한 경영 관련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 (1) 중요한 투자에 관한 사항
-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4) 결손의 처분
-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 (6) 타법인에 대한 출자·출자지분의 처분 및 기 결의된 취득액 또는 처분액에 대한 변경
- (7) 출자 비상장 법인 존폐 관련
- (8) 신주의 발행
- (9)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10) 준비금의 자본전입
- (11) 전환사채의 발행
- (1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3) 다액의 자금도입, 차입 및 보증행위, 통상적인 거래의 범위를 벗어난 어음의 발행
- (14)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 기타 담보권의 설정
- (15)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16) 자기주식의 소각
- (17) 주식의 분할·병합
- (18) 주식의 액면·무액면 전환
- (19) 해외 증시 상장
- (20) 단기 차입금 증가
- (21) 채무 인수·면제, 담보 제공·채무 보증

(22) 금전의 가지급·선금·대여

(23) 피보증 법인 존폐 관련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상법 제398조에 해당하는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의 승인

(1)-2 상법 제397조의 2에 해당하는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2) 상법 제397조에 해당하는 이사의 경업/겸직 승인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기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

①-2 이사회에 부의할 자회사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정관의 변경

(2) 자본의 감소

(3)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4) 주식의 소각

(5)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6)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7) 기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3)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변동, 신규법인 설립

(4) 간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5)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6) 회사의 중대한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사항 (영업정지, 거래중단, 제품 수거·파기, 생산 중단, 단일판매·공급 계약 등)

3. 재무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1항 제3호 재무에 관한 사항 중 건당 50억원 또는 연간 누계 기준 100억원을 초과하는 건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회사와 그 자회사에 관한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③ 대표이사는 회사와 그 자회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기별 사업실적 및 경영성과에 대하여 다음 분기에 첫 번째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
 2. 연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에 대하여 다음 년도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이사 요청사항
- ④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및 본 규정 제11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그 결정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전 결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내부회계관리제도관련 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조직구조, 보고체계 및 성과평가 연계방식 검토
2. 회사 내 재무보고 및 부정위험과 관련된 제반 위험에 대한 이해와 검토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경영진의 중요한 조치사항 검토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변화 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조치사항 검토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에 대한 확인 등

제14조(의사록)

①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0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